

# 2020년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46건(안건번호 제2020-64509호~657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64512호는 '▲▲▲▲▲▲▲▲'에 우리말로 번역한 웹코믹을 이용할 수 있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저작자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웹코믹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저작자가 국내 블로거에게 번역,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자의 이용허락 상대방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64513호, 64514호는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각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0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49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40759호~4225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6개, 총 1,49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회의록 12페이지에 연구자의 소속이 변동된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주셨고,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6쪽, 28쪽에 단순한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7쪽의 블로그 소개 내용, 저작물명, 방송사명, 8쪽의 게시물 내용, 9쪽의 저작물명, 10쪽의 출판사명, 온라인 소설 플랫폼명, 작가 닉네임, 저작물명, 11쪽의 사이트 주소, 게시판명, 민원 신고내용, 사이트명, 회사주소, 16쪽의 출판사명, 17쪽의 출판사명, 사이트명, 20쪽의 사이트명, 21쪽의 출판사명, 22쪽의 저작물명, 회사명, 서류 발행일, 공문 제목, 23쪽의 회사명, 계약일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취소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출판사명, 사이트명, 민원 신고내용 등에 대해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민원 신고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이십세기 폭스코리아(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픽처스', '(주)싸이더스', '일본 NTV', 'tvN', 'TV조선', 'OC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A 위원, C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4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2020-64509호~6571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같음하겠음.  
안전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 ■■■■■ ■■■ ■■■■■■■■■ ■■■■■■■■', '○○○○ ○○ ○○○○ ○○ ○○○○', '★★★★'을 판매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 중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4509호는 만화 '■ ■■■■■ ■■■ ■■■■■■■■■ ■■■■■■■■'을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안전번호 제2020-64510호는 만화 '○○○○ ○○ ○○○○ ○○ ○○○○'도 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출판사는 '○○○○○'임.
  
- B 위원: 출판사 '○○○○○'가 다수의 일본 만화를 국내에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A 위원: 해당 출판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일본 만화 번역·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4511호는 만화 '★★★★'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30포인트에 구매 가능함.

- B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하는데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4509호~6451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자가 무료 제공하는 만화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하였으나 권리자는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위 이용자는 2016. 9. 8.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업로드함. 심의대상 게시물





였음.

- B 위원: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에 게시가 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 성원영 전문위원: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 이용자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연결되는 웹코믹 번역본과 위 네이버 블로그의 웹코믹 번역본이 동일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 일자가 저작자가 네이버 블로거에게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인 2016. 9. 4.임. 그러므로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와 위 네이버 블로거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

(웹코믹 '◆◆◆◆◆ ◆◆◆◆◆'이 게시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 '♣♣♣♣♣♣', '작가소개' 메뉴 버튼이 있고 '☆☆☆☆☆'에 접속하면 영어로 된 웹코믹 '◆◆◆◆◆ ◆◆◆◆◆◆◆'을 무료로 볼 수 있음.

- A 위원: 웹툰과 웹코믹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구글에 웹코믹과 웹툰을 검색해보면서) 웹툰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며 서구권에서는 웹코믹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음. 해당 안건의 경우 민원인이 웹코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웹코믹이라고 게재함.

- B 위원: 만화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웹코믹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발행된 출판물을 스캔해서 jpg파일 등으로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웹툰이 아닌 만화로 봐야할 것임.
- A 위원: 웹툰은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지?
- 정현순 전문위원: 웹툰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임.
- A 위원: 'Cartoon'과 'Comics'는 구별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웹툰 창시국인데 용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웹툰'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만 사용하다보니까 해외에서 웹툰이라고 하면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받아들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645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저작자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웹코믹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저작자가 국내 블로거에게 번역,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저작자의 이용허락 상대방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으며 부결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451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451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ㄷㄷㄷ’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32개이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물명, 게시자가 동일하여 1개의 안건으로 묶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해보겠음. 스트리밍 영상에 우리말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64514호는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2020. 4. 7.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카페 게시판에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해보겠음. 총 24분이며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645

13호, 645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4513호, 645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침입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478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침입자'를 1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송지효, 김무열이 주연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임. 2020. 6. 4. 개봉하였으며 현재 상영중임. 7. 6. 기준 누적 관객수는 531,577명임.

(영화 '트롤: 월드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806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트롤: 월드투어'를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6년 개봉한 '트롤'의 2번째 시리즈로 극장과 VOD에서 동시 상영되었음.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82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언더워터'를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에서 배급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9,900원에 구매, 4,900원에 대여 가능함.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93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되었음. 2020. 5. 14. 개봉하였으며, 수입·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임. 7. 6. 기준 누적관객수는 36,242명을 기록함. 해당 영화는 소설 '야성의 부름'을 영화화한 작품임.

(영화 '그레텔과 헨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09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그레텔과 헨젤'을 3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각색한 작품임.

(방송 '맛있는 녀석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398호는 방송 '맛있는 녀석들' 279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은 comedy TV에서 방영되었음.

(방송 '뽕숭아학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5652호는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뽕숭아학당'을 1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방송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9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은 'tvn'에서 방영한 16부작 드라마임. 추자연, 정진영 등의 배우가 출연함.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C 위원, D 위원, A 위원: (심의안건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4515호~6571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4512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2020-64509호~64511호, 제2020-64513호, 64514호, 제2020-64515호~6571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2020-40759호~4225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1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